

PI첨단소재 협력회사 행동규범

PI첨단소재는 협력회사를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망 관리를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PI첨단소재는 협력회사에 윤리,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경영시스템 분야에서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제시를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PI첨단소재는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설문 또는 방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ILO) 등 다양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으며, PI첨단소재의 관리 규정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규범과 변동사항은 PI첨단소재의 모든 협력회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1. 법과 윤리규정 준수

1.1 청렴 및 부당이익 금지

모든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횡령, 청탁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거나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 되며,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근절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2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1.3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와 PI첨단소재의 영업비밀에 대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

1.4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주주,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 신원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회사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등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보호 절차를 운영하고,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인권경영

2.1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및 교육 등의 대우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2.2 자발적 근로

협력회사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되며, 협박, 강요, 강제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고용주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을 임의로 요구할 수 없다. 근로조건 또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한다.

2.3 아동 근로자 보호

협력회사는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 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2.4 근로시간 준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지양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2.5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 임금기준에 따른 급여와 합당한 복리후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급여 기준 및 항목이 기록된 급여 지급 내역을 서면 또는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2.6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 성적학대,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그리고 욕설 및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행위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을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의무 준수

3.1 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 관리, 안전한 작업절차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착용 의무를 교육해야 한다. 임신 또는 수유기의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거나 유해한 작업의 근무를 제외시키고,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수유시간 및 장소 등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2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사태별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시 효과적인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추적 관리를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하고,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인력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4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노출 여부를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평가한다. 잠재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감독/관리/개선조치 등을 통해 유해요인들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육체적 과중 업무 통제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오래 서 있는 작업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를 해야 한다.

3.6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 해당 기구 및 설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보호 장치 및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3.7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비치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4. 깨끗한 환경 구축

4.1 환경 인허가

협력회사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이에 대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2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에너지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원/에너지(물, 연료 등)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분석하여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3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및 관리

협력회사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서 금지하는 물질 및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을 파악/기록하고, 안전하게 취급, 보관, 사용, 폐기해야 한다.

4.4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적법한 방법에 의해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5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 연소부산물의 종류를 파악하여 감시/통제 후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4.6 수자원 관리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모든 폐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 또는 폐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5. 경영시스템 반영

5.1 자율준수 의지표명

협력회사 경영진은 본 규범의 준수책임자로서 그 의지를 사업장 내에 전파해야 한다.

5.2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5.3 리스크 관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의 분야별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리/통제하며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4 목표관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에 대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 현황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5.5 교육 및 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5.6 임직원 참여 및 고충처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 의견 취합 및 지속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7 문서와 기록

협력회사는 윤리, 환경,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